

## 삼척시 도계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안내

2022년도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장학생을 재단 운영세칙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. 4. 6.

재단법인 삼척시 도계장학재단 이사장



① 접수기간 : 2022. 4. 11.(월) ~ 4.21.(목) 18:00까지(공휴일 제외)

### ② 장학생의 자격

가. 공통 : 본인 또는 친권자(후견인)의 주소가 2020년 4월 11일 이전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삼척시 도계읍으로 등록되고,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(2년이상)

나. 자격 :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, 또는 도계읍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

| 구 분            | 신 입 생   | 재 학 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대학생<br>(전문대학생) | • 졸업학교 고3 평균 교과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 또는 검정고시 평균 70점 이상인자  | • 전(前)학년 평균성적이 B <sup>0</sup> 학점 이상인 자 |
| 고등학생           | • 도계읍 관내 학교장 추천 (별도 신청 없음)  |  |
| 기 타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자<br/>저소득 가정을 20%선발하고, 장학생 선발인원이 미달 될 경우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성적순으로 정한다<br/>⇒ 저소득 가정이라 함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의 능력이 없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도계읍장이 불우가정으로 인정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함.<br/>1. 기초생활수급자, 2. 장애인의 자녀, 3. 한부모 가정,<br/>4. 진규폐환자의 자녀</li></ul> |  |

※ 학업수행 과정 중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타 장학금 수혜 시 최종 장학생 선발 시 자급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, 삼척 향토장학재단 등 삼척시 출자출연 기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
### ③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

- 선발인원 : 대학생(전문대생 포함) 40명 / 고등학생 10명
- 지급액 : 1인당 대학생 1,000,000원 고등학생 500,000원  
※ 학업수행 과정 중 학자금 및 생활에 필요한 자금

### ④ 추천 및 신청방법

- 대학생 :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신청
- 고등학생 : 학교장 추천

### ⑤ 제출서류

- 공통 : 삼척시 도계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 <서식1>  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<서식2>  
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)  
※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
통장사본(본인 또는 부모)
- 신입생 : 대학 합격통지서,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
검정고시 성적증명서(해당자)
- 대학생 : 재학증명서, 직전학년(1,2학기) 성적증명서
- 저소득가정 관련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 
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등

### ⑥ 접수처 및 접수방법

- 접수장소 :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(총무부서)
- 접수방법 : 직접 또는 우편  
(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- 주소 : (우)25947,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재단법인 삼척시도계장학재단

### ⑦ 장학생 선정 및 통보

-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(전화 또는 문자)
- 기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(033)570-4704로 문의

## ⑧ 대학생 접수 시 유의사항

### - 성적 : 성적 미달자는 접수 불가

» 신입생의 경우 고3 평균 교과등급 4등급 이내인 자

※ 계산방법 : 과목등급 × 단위 수 / 총 단위 수

»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(1·2학기) 평균 평점이 B<sup>0</sup>이상인 자

» 단,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은  
성적에 상관없이 접수(증명서 첨부 확인)

### - 거주기간 : 거주요건 미 충족시 접수 불가

»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도계읍에 2년 이상 거주